

의안 검토 보고서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6. 29. 대전광역시장
2. 건 명 : 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3. 안 건 요 지 : 따 로 붙 임
4. 검 토 의 견 : 따 로 붙 임

위 안전에 대한 검토사항을 별첨과 같이 보고합니다.

2007년 7월 일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전문위원 장 예 순

대전광역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

본 안건은 2007년 6월 29일 대전광역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1. 개정이유

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을 정비함(안 제1조 및 제2조).

3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06. 4. 28일에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, 인용하고 있는 법률명칭과 인용된 내용을 개정된 법률 명칭과 관련 조항으로 변경하고, 법률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+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